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개정내용 및 개선방안*

이 승 현**

국 | 문 | 요 | 약

학교폭력을 규율하기 위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소년법, 형법, 형사소송법 등의 다양한 법률이 있긴 하지만 이들 법률이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지 못하다. 본 논문에서는 2012년 3월 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검토하였고 이들 내용이 학교폭력 예방 및 처리에 적합한지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보면, 조치거부나 기피에 대한 징계수위가 높지 않아 제재로서 효과적이지 않으므로 제재수위를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퇴학처분은 의무교육대상자인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게 되므로 초중생에 대한 징계로서 대안학교 교육 등 별도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서면사과의 경우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고 형사처벌의 증거자료로 활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되어야 한다. 제17조 제1항 제5호의 특별교육은 제17조 제3항의 교육감의 특별교육과 다르지 않으므로 삭제하되, 제17조 3항의 특별교육에 출석일수 산입규정을 두도록 한다. 보호자교육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소년법상 과태료 부과 규정과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에 대하여, 장애학생에 대한 보호규정은 있으나 위반에 대한 가중 규정은 없으므로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의 경우 징계수위를 높여야 한다. 학교안전공제회의 피해보상은 적절하지 못하므로 실질적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학교폭력법에 전문상담교사 배치가 의무화되어 있긴 하나 초중등교육법에는 배치할 수 있다 고만 규정되어 있고 실무상 배치되지 않은 학교가 대부분이다.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현실화하기 위해 학교폭력 피해가 많은 중학교부터 먼저 배치하도록 하고, 전문상담교사의 배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그 대안으로서 Wee스쿨과 같은 위탁형 대안시설을 활용한 상담교육을 해야 할 것이다.

학교폭력의 분쟁해결을 위해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활동하고 있으나 실질적 분쟁조정역할을 하지 못하므로, 학교 내의 해결보다는 소년법상 화해권고제도와 연계하여 재판상 화해와 같은

* 이 글은 필자가 2012년 4월 14일 한양법학회 형사법분과 학술세미나 발표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법학박사.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독자적 분쟁기구를 마련해야 한다. 그밖에도 조기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년법상 학교장통고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 ❖ 주제어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 피해학생 보호, 분쟁조정.

I. 서

일산 알몸졸업식사건¹⁾, 빵셔틀²⁾, 동영상유포사건, 집단성폭행, 학교폭력으로 인한 대구여중생 자살사건 등 학교폭력 문제가 최근 들어 그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학교폭력은 일진 등의 조직활동으로 이어져 날로 흉포화·집단화·지능화되고, 피해자나 가해자는 중·고등학생 뿐만 아니라 초등학생에까지 이르고 있어 저연령화 현상이 강하다. 단순한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심리적·정신적 폭력도 증가하고 있고, 금품갈취 외에도 왕따, 살인, 자살 등으로 이어져 큰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제 학교폭력 문제는 학생들의 단순 장난의 수준에서 넘어서서 학교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되어버렸다.

학교폭력 대책들이 무수히 쏟아지고 있지만 학교폭력이 줄어들지 않고 학교폭력 문제가 끊임없이 이슈화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고민해 봐야 한다. 학교에서 교육적 차원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처분을 하고 있지만 피해학생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조치와 후속조치들이 없고, 가해학생에 대하여도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다시 재범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채 선도를 하고 있어 학교폭력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학교폭력의 신고와 조치에 관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이라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긴 하지만, 현실적 적용에 있어서 미비한 점이 있고, 피해학생

1) 2010년 5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는 일산 모중학교 졸업식 알몸 뒤풀이 가해학생 15명 가운데 2명에 대해 법원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고, 나머지 13명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연합뉴스, 일산졸업식 ‘알몸 뒤풀이’ 15명 선처 가다, 2010년 5월 25일자).

2) ‘빵셔틀’이란 빵과 셔틀의 합성어다. 셔틀(shuttle)이란 스타그래프트라는 게임을 통해 청소년 사이에 널리 퍼진 말로 운송수단을 의미한다. 빵셔틀은 빵을 사다주는 학생, 즉 심부름꾼을 의미한다.

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를 위한 진정한 대책으로서 한계가 있다.

학교폭력을 규율하기 위한 법규로서 학교폭력예방법과 소년법 외에도 형법상 상해(제257조), 폭행(제260조), 감금(제276조), 협박(제283조), 명예훼손(제307조) 등의 규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폭력 규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보통신망 이용 음란·폭력정보 규제, 형사소송법상 형사소송절차, 초·중등교육법상 전문교사 배치 등에 관하여 다양한 법률로 규율되고 있긴 하지만 이러한 법률들이 실질적으로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처벌에 적절한지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하다. 학교폭력 관련법제 모두를 검토하기에는 지면관계상 어려움이 있는바 학교폭력예방법을 중심으로 검토하되, 그와 관련하여 언급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한하여 다른 법률의 내용도 함께 검토하도록 한다.

2012년 3월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되었으나 아직까지 이들 개정내용이 타당한지,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제도적 장치가 고려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의 내용을 개정 전후 내용과 비교하는 한편,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항들이 개정법상 얼마나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이하에서는 학교폭력의 현황과 학교폭력예방법의 제정 및 개정과정에 대한 검토를 통해 최근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피해학생의 보호뿐만 아니라 가해학생의 선도 및 교육을 위한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학교폭력의 현황과 학교폭력예방법의 제·개정

1. 학교폭력의 현황

학교폭력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한 기관에 따라 그 현황이 많이 다르고, 학교와 학교폭력의 특성상 은폐·축소되거나 신고되지 않는 사례가 많아 정확히 학교폭력

의 실태³⁾가 어떠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공한 각 학교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실태를 파악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 개최실적

	심의건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2008	207	6,089	2,517	8,813
2009	151	3,846	1,608	5,605
2010	231	5,376	2,216	7,823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폭력근절팀 내부 통계자료, 2011.

시도교육청별로 집계한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개최실적을 보면 2009년도에 5,605건에서 2010년도에 7,823건으로 증가하였다. 초등학교의 경우 2009년 151건이었으나 2010년 231건으로 전년대비 53%가 증가하였고, 중학교의 경우 2009년 3,846건이었으나 2010년 5,376건으로 전년대비 39.8% 증가하였으며, 고등학교의 경우 2009년 1,608건에서 2010년 2,216건으로 전년대비 37.8%가 증가하였다. 학교폭력 가운데 중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중학생의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모색이 시급해 보인다.

2010년도 통계를 바탕으로 학교폭력의 유형을 살펴보면 신체폭행이 5,119건(65.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금품갈취가 1,367건(17.5%), 집단 따돌림이 206건으로 나타났다. 성폭행의 경우 2009년 110건, 2010년 148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2010년도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현황을 보면 전체 가해학생 19,949명 가운데 7,211명(36.1%)이 학교봉사명령을, 3,488명(17.5%)이 사회봉사를, 3,437명(17.2%)이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를, 1,849명(9.3%)이 서면사과를, 1,395명(7.0%)이 출석정

3)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전국 11,363개 초중고, 559만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참여율이 25%에 불과했고, 회수율도 10%미만을 기록하였다. 부실한 설문회수 관리와 데이터입력 오류 등으로 문제가 많은 조사이었으므로, 실태조사에 관한 내용 소개에서 제외한다.

지를, 1,129명(5.7%)이 전학을, 816명(4.1%)이 접촉협박금지를, 135명(0.7%)이 학급교체를, 93명(0.5%)이 퇴학처분을 받았다. 한편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보면 전체 피해학생 13,748명 가운데 10,567명(74.9%)이 심리상담을, 635명(4.6%)이 일시보호를, 608명(4.4%)이 보호조치를, 590명(4.3%)이 치료요양을, 73명(0.5%)이 전학권고를, 23명(0.2%)이 학급교체가 되었다. 가해학생에 대한 강력처벌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면서⁴⁾ 점차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이 강력해지고 있는 반면에 피해학생에 대하여는 심리상담이나 치료요양 등을 통해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2. 학교폭력예방법의 성격

학교폭력예방법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교육적 목적에서 제정되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서 학교폭력예방법의 성격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일반적으로 징계법과 형법을 구별함에 있어서 ① 형법은 과거에 저질러진 범죄에 대한 해악부과를 본질로 함에 반해, 징계법은 오로지 징계수단과 보호조치만이 문제되고, ② 징계법의 경우 죄형법정주의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구성요건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행위자 중심으로 내용이 구성되는 특징이 있으며, ③ 징계조치는 행위자에 대해서만 일정한 영향을 미치나, 형벌은 일반국민에 대한 영향도 고려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본다.⁵⁾

학교폭력예방법의 경우 학교라는 특정 조직을 중심으로 규율되고 있고, 학교폭력예방법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규정은 학교조직을 둘러싸고 발생한 폭력행위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마련된 징계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학교폭력예방법 상의 선도조치나 징계조치들은 일반국민보다 가해학생에 대하여 영향을 끼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징계법적 성격을 갖는다고 보인다. 만일 학

4) 김진찬, “학교폭력 실태와 예방: 나 때리지마! 너 지켜줄게! 우리 모두는 소중한잖아”, 법연 26호, 한국법제연구원, 2012.2, 15-16면.

5) 박찬걸, “학교폭력대책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 소년보호연구 제15호, 2010, 97면; 이진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체계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입법정책 제1권 제1호, 2007, 104면.

교폭력예방법이 형사법이라면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가 결정된 이후 형법적 가벌성을 전제로 한 소년법의 적용은 배제되어야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학교폭력예방법과 소년법은 징계법과 형법의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가해학생에게 선도·징계조치가 내린 후 소년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헌법 제13조 제1항 후단의 일사부재리원칙에 반하지 않는다.⁶⁾

3. 학교폭력예방법의 개정과정

1990년대 후반부터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면서 1995년 정부에서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경찰에서는 ‘학교담당 경찰관제’를, 검찰에서는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1997년 서울고내 폭력조직 폭행사건과 2001년 부산 학교폭력 가해자 살해사건 등이 발생하자 정부는 민관공동 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회를 발족하였다. 2003년 12월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다음해 1월에 공포되고, 이 법률에 따라 정부는 2005년 3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2005년 3월 일진회 폭력사건, 2005년 10월 부산 중학생사망사건, 충주여고생 일진회 폭력으로 인한 자살사건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었고 몇 차례의 법개정 작업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학교폭력은 줄어들지 않고, 집단따돌림, 무단결석, 가출, 살인, 자살 문제 등으로 연결되면서 그 심각성을 드러내었다. 2011년 3월 청주고등학교 남학생 자살사건, 7월 대구 여중생 자살사건, 12월 대전여고생 자살사건, 대구 남중생 자살사건, 청주 중학교 남학생 일진 폭행치사사건, 광주중학교 남학생 자살사건, 2012년 1월 대전 여고생 자살사건, 전주 남고생 자살 사건 등으로 이어지면서 또다시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해졌다. 이에 정부는 2012년 2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였고, 그동안 국회에서 심의되었던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취합하여 2012년 3월 학교폭력예방법을 개정하였다.

학교폭력예방법은 제정 이후 11번의 개정이 있었는데, 정부조직법 등 타법 개정

6) 박윤기, “학교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동아대 박사학위논문, 2008, 82면.

으로 인한 개정을 제외하고 2008년법(법률 제8887호)과 2009년법(법률 제9642호), 2011년법(법률 제10642호), 2012년법(법률 제11223호, 법률 제11388호) 개정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최근 학교폭력이 또다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2012년 5월 현재 제18대 국회에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24건이 상정되어 1건만 계류된 상태이고, 대부분 대안법률안을 통해 반영되었다.

〈표2〉 제18대 국회에서 발의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법률안

일자	대표발의	내 용	결과
2008.7.14	배은희의원	학부모대표를 자치위원으로 포함	폐기
2008.8.19	안홍준의원	가해학생 특별교육 이수시 보호자도 함께 교육	폐기
2008.8.27	한선교의원	긴급상담전화 설치, 피해학생에 대한 보복금지, 신고접수자의 학교장 통보 의무화, 장애학생에 대한 보호규정 마련	수정가결
2009.4.20	이철우의원	농어촌지역의 소규모학교에 대한 자치위원회 구성에 관한 지원	대안반영 폐기
2009.9.18	이정현의원	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 대상에 심리학자 추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상담 강화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하는 비용 범위 확대	대안반영 폐기
2009.12.4	김세연의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경한 조치에서 중한 조치순으로 변경	대안반영 폐기
2010.5.18	김기현의원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	대안반영 폐기
2010.7.26	배은희의원	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화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	수정가결
2010.10.1	김춘진의원	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화 전담기구의 전문기관에 대한 조사 의뢰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치료를 위한 요양비 먼저 부담 가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의무화 특별교육받는 가해학생의 보호자의 교육이수 의무화 자치위원회로부터 조치요청받은 학교장의 조치기간을 30일 이내로 규정	대안반영 폐기
2010.11.10	장윤석의원	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화 자치위원회로부터 조치요청받은 학교장의 조치기간을 15일 이내로 규정	대안반영 폐기

일자	대표발의	내 용	결과
2011.1.3	조경태의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피해학생을 긴급하게 치료해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자치위원회 의 요청 전 학교안전공제회에 공제급여 청구가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10일 이내의 교내 정학조치 신설	대안반영 폐기
2011.5.25	이명수의원	타법(세중사법)개정으로 인한 개정	대안반영 폐기
2011.6.1	권영진의원	학교폭력의 유형을 학교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행위 로 확대 가해 학생의 보호자가 가해 학생과 함께 봉사 또는 특별교육에 함께 참여하는 경우 조치이행기간 또는 특별교육 이수 기간 을 경감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가능	대안반영 폐기
2011.11.11	이재오의원	피해학생의 치료, 회복 및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 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10일 이내의 교내 정학조치 신설 피해학생을 긴급하게 치료해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자치위원회 의 요청 전 학교안전공제회에 공제급여 청구가능	대안반영 폐기
2011.12.1	조경태의원	학교폭력의 피해에 대한 치료지원에 있어 그 범위를 피해학생뿐 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확대	대안반영 폐기
2011.12.30	위원장	학교 내외 관련 종사자들이 따돌림의 심각성을 인식하도록 따돌 림의 정의 신설, 강제적인 심부름도 추가 기획위원회 위원에 심리학자를 포함 자치위원회의 소집요건을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으로 완화 성폭력 등 특수한 학교폭력사건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을 전담하 는 기구가 전문기관에 조사 의뢰 피해학생의 치료를 위한 요양비 뿐만 아니라 심리상담·조언 및 일시보호에 소요되는 비용까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불분명하거나 부담능력이 없는 경우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 교육청이 우선 부담, 이후 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가능, 필요시 피해 학생의 보호자로 하여금 학교안전공제회에 공제급여를 직접 청구가능.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경한 조치'에서 '중한 조치' 순으로 순서를 변경	원안가결
2012.1.12	안민석의원	학교별로 설치되는 학교폭력전담기구 활성화 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긴급한 조치의 실효성 높임	대안반영 폐기
2012.1.17	전병헌의원	사이버 따돌림 행위에 대한 범위를 법적으로 규정	대안반영 폐기

일자	대표발의	내 용	결과
2012.1.26	배은희의원	학교폭력이 학교현장에서 은폐 또는 축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행위를 한 교원 징계,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 마련에 기여한 교원에게 인센티브 제공 전문상담교사를 의무적 배치	대안반영 폐기
2012.1.30	원유철의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의 협박이나 보복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회의 소집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일 경우에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병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 가능	대안반영 폐기
2012.2.3	변재일의의원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범정부 추진체제 개편 시군구 단위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신설 교육감의 임무에 전문적인 지원기관 설치·운영 시·도교육청, 전문적인 지원기관에 학교폭력에 관한 전문적 조사 인력 지정 신설 학교폭력 실태조사 신설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전학권고 삭제 및 학교안전공제회에 공제 급여 직접신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학부모 교육 의무화 가해학생 특별교육 이수시 보호자도 함께 받도록 의무화 정보통신망에 의한 학교폭력 신설	대안반영 폐기
2012.2.3	최영희의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 국무총리소속하 학교폭력대책중앙위원회 설치 학교폭력대책중앙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기간을 30일 이내로 연장	대안반영 폐기
2012.2.15	윤석용의원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에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인력 추가	계류
2012.2.27	위원장	기존 학교폭력의 범위를 ‘학생 간에 발생한’ 사건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확대하고, 사이버 따돌림 규정 추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학교폭력 대책위원회 설치 시·군·구에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구성 교육감으로 하여금 연 2회 이상 학교폭력 실태조사 실시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교감포함 학교폭력 예방 교육에 학부모 추가	원안가결

이하에서는 대표적인 개정법률의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학교폭력예방방법의 변화 경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1. 2004년 학교폭력예방법 [제정]

2004년 법 제정 이전에는 학교폭력에 대한 법적 해결에 있어서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처벌의 부분은 초·중등교육법상의 교칙이나 소년법으로 처리되었고, 가해자의 손해배상에 관한 부분은 민법에 의해 해결되었을 뿐, 피해학생의 보호라는 부분은 고려되지 않았다. 당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던 학교폭력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04년 1월 29일에 공포되고 7월 30일부터 시행된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동법은 전담기구의 설치, 정기적인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학교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선도·교육 등을 통해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2004년 제정법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가 최초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가장 큰 특징이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계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다(법 제6조). 그리고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다(법 제9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초·중·고등학교 등에 당해 학교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교사 및 학부모 등을 위원으로 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동 위원회에서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구성 및 실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징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다(법 제10조). 학교의 장은 학교에 상담실을 설치하고 전문상담교사를 두도록 하며, 교사 중에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책임교사를 선임하도록 하였으며(법 제12조),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다(법 제13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 대한 학급교체, 전학권고 또는 전학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14조 및 제15조).

2. 2008년 학교폭력예방법 [전부개정]

2008년에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은 학생폭력의 개념 속에 성폭력을 포함시키도록 하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성폭력 피해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화하였다(법 제2조 및 제5조 제2항).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와 치료 및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를 강화하기 위해 피해학생 치료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하되,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이를 부담하지 않을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 교육청이 부담하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고(법 제16조 제5항), 학교폭력자치위원회는 가해 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17조 제8항).

3. 2009년 학교폭력예방법 [일부개정]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 마련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그 양상 또한 중범죄화됨에 따라 2009년 학교폭력예방법은 긴급상담전화 설치, 피해학생에 대한 보복행위 금지, 장애학생 보호규정 마련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고자 하였다.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 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 전문 치료기관의 요양을 가능하게 하였다(법 제2조 제5호, 제16조의2 신설). 피해학생은 피해사실 확인을 위해 전담기구에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법 제14조 제5항 신설), 피해학생에 대한 보복행위를 금지하였다(법 제17조 제1항 제2호). 학교폭력 신고 및 상담을 위해 긴급전화를 설치하였다(법 제20조의2 신설).

4. 2011년법[일부개정]

2011년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여 학교폭력 예방을 꾀하고자 하였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전제 위원 과반수를 학부모대표로 위촉하도록 하고(법 제13조 제1항), 피해학생,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며(법 제13조 제3조, 제21조 제3항 단서 신설), 교육장으로 하여금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위한 홍보물을 연 1회 이상 학부모에게 배포하도록 하였다(법 제13조 제4항 신설).

5. 2012년 개정법[일부개정]

2012년 3월에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의 개념을 ‘학생을 대상으로 한’ 행위로 확대하고, 사이버따돌림도 학교폭력의 유형에 추가하였다. 학교폭력 피해의 신속한 해결과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를 위한 조치 등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현행법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학교장 및 교원의 징계에 관한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이에 관하여는 다음에서 자세히 살펴본다.

III.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법률 제11388호)의 주요내용

최근 연이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학생 자살이 이어지고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져감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2012년 2월 6일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이 내용을 반영하여 일부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이 2012년 2월 27일 국회를 통과하여 3월초에 정부 이송되어 3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대통령의 공포절차를 거쳐 5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다만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시급하다고 판단한 일부조항은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하에서는 본격적으

로 시행된 학교폭력예방법의 개정내용에 대하여 살펴본다.

1. 학교폭력의 범위 확대

기존의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에서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개정법에서는 그 범위를 확대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사이버따돌림까지 추가하였다.

(1) ‘학생을 대상으로 한’ 확대

기존의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생간’ 발생한 행위만을 학교폭력으로 규정하였다. 그래서 가해자나 피해자 중 일방이 근로청소년 등 학생이 아닌 경우에는 학교폭력이 아니고 이 경우 학교폭력예방법이 적용되지 않아 소년법에 의해 가해학생을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분하거나 민법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개정법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폭력의 범위를 확대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행위로 규정하여 학교밖 청소년 등에 의한 학교폭력도 동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개정법 제2조 제1호).

(2) 사이버따돌림 추가

기존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따돌림만 규제하였다.

최근에는 인터넷 카페와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놀림이나 욕설, 따돌림을 당하고 있고, 이런 일들이 가상공간에서 벌어지다보니 가해 학생들이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교사나 학부모들도 이를 제

재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개정법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도 ‘사이버따돌림’으로 보아 처벌하도록 하였다(개정법 제2조 제1호 의3).

2.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강화

학교폭력 피해로 인해 가해학생이 아닌 피해학생이 전학가는 상황이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해지자 개정법은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유형 중에 ‘전학권고’ 규정을 삭제하였다.

〈표3〉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유형

개정 전	개정 후
1. 심리상담 및 조언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2. 일시보호
3. 치료를 위한 요양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4. 학급교체
5. 전학권고	5. 〈삭제〉
6. 그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6. 그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자치위원회 요청 7일 이내에 이행하도록 하였고, 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할 경우에는 피해학생 및 보호자의 의견 진술 기회를 주도록 하였다.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감이 바로 비용을 부담한 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학생을 두렵게 보호하였다(개정법 제16조).

기존의 가해학생의 전학 및 퇴학조치에 한정되었던 재심청구를 피해학생에게도 허용함으로써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였다(개정법 제17조의2).

3. 가해학생에 대한 치료적 접근

기존 학교폭력예방법은 주로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처벌에 집중되어 왔다.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은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조치를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교체, 전학,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10일 이내의 출석정지, 퇴학처분 등 9가지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가해학생에 대한 규제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법에서는 가해학생에 대한 제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추가하였다. 가해학생에 대하여 피해학생뿐만 아니라 신고·고발학생과도 접촉을 금지하도록 하였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서 출석정지에 대하여 기간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였다.

〈표4〉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유형

개정 전	개정 후
1. 서면사과 2. (피해학생)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의 특별교육이수 심리치료 6. 10일 이내의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1. 서면사과 2. (피해학생+ 신고·고발학생)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의 특별교육이수 심리치료 6. (기간 없음)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 2,3,4,6,7,8의 경우 심리치료 의무화 ※ 학부모 특별교육 의무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자치위원회의 요청 14일 이내에 이행하도록 하여 가해학생을 신속하게 격리하도록 하였다. 또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에 대하여는 병과 및 가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가해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추가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개정법 제17조).

기존 학교폭력예방법은 가해학생에 대한 즉시 출석정지 등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격리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뿐 회복적 정의를 위한 국가적 노력 의지가

없었다. 장기간 출석정지를 당하거나 전학 보내질 가해학생에 대하여 지속적인 상담과 지도를 해줄 구체적 대책이 없었다. 학교폭력 대책이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처벌로 극단적으로 나누어지는 것은 조기에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가해학생이 치료받을 기회를 박탈하게 된다. 이에 2012년 개정법에서는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가해학생에 대한 치료에도 초점을 맞추었다.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 대한 보복·협박 등을 한 경우, 학교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또는 전학처분을 받은 경우 가해학생도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개정법 제17조 제3항).

학교폭력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학교의 노력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부모의 관심과 노력도 필요한바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가해학생 학부모도 특별교육을 받도록 하고(개정법 제17조 제9항), 가해학생 학부모가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학부모의 책임성을 강조하였다(개정법 제22조 제2항).

4.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등 추진체계 개편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소속하에 있던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하에 두고(개정법 제7조), 시도에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시군구에는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두어 학교폭력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개정법 제10조의2).

〈표5〉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관한 개정내용

	개정 전	개정 후
명칭	학교폭력기획위원회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소속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국무총리
구조	시도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시도 :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시군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구성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	위원장 2명 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

	개정 전	개정 후
위원장	교육과학기술부 차관	국무총리와 학교폭력 대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공동
구성원	1.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10년 이상인 교원 2. 삭제 3.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청소년 또는 의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 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학교폭력 문제 및 이에 따른 상담 또는 심리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 5. 판사·검사·변호사 6. 전문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자 7. 의사의 자격이 있는 자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경찰청장 2. 학교폭력 대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제1호의 위원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사람 3.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청소년 또는 의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 및 이에 따른 상담 또는 심리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5. 판사·검사·변호사 6. 전문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7. 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시도교육감으로 하여금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연 2회 이상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조사·상담·치유를 위한 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치유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개정법 제11조 제8항, 제9항).

개정법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자치위원회를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고(개정법 제13조 제2항),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적극적인 운영을 위해 교감을 포함하도록 하였다(개정법 제14조 제2항).

〈표6〉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 관한 개정내용

	개정 전	개정 후
개최횟수	없음	분기별 1회 이상
소집사유	1. 자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4.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자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4.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5.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교원에 대한 징계 및 인센티브

학교현장에서 학교폭력을 문제시하지 않는 것을 개선하고자 학교폭력을 축소·은폐한 학교의 장 및 교원에 대해서는 징계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개정법 제11조 제10항),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한 자에 대해서는 상훈을 수여하거나 근무성적 평정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개정법 제11조 제11항) 교직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학교폭력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6. 정보통신망 이용 예방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또는 학교폭력에 대하여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개정법 제20조의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업무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개정법 제20조의4), 학교폭력예방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교 내외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 관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개정법 제20조의6).

IV. 학교폭력예방법의 개선방안

2012년 개정법을 통해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부분들이 상당부분 문제가 해결되었다. 학교폭력 유형에 사이버따돌림이 추가되거나 학교 밖 학교폭력문제를 포섭할 수 있는 규정 마련, 보호자에 대한 교육조치 마련, 협박·보복행위에 대한 가중 규정 마련 등이 대표적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학교폭력예방법의 실무적 적용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전히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하여 상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1.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개선 필요

(1) 조치거부 또는 회피에 대한 징계수위 마련

현행법상 가해학생이 학교장의 조치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이를 이유로 자치위원회를 열어 가중된 조치를 취할 수 없다. 다만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4항에서와 같이 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할 경우 ①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②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③ 학교에서의 봉사, ④ 학내 외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⑤ 출석정지를 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도록 한다. 그러나 초중등교육법 제18조상의 징계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학교 내의 봉사, ② 사회봉사, ③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④ 퇴학처분이다. 학교장의 조치를 거부하거나 회피한 자에 대한 징계조치가 학교폭력예방법상 조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조금 강하다고 할 수 있는 퇴학처분조차 의무교육대상자가 되는 중학생까지는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 징계의 내용과 수위가 적절한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조치를 거부 또는 회피한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에서 그 징계수위를 보다 높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4항에서 말하는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할 경우’에 대한 판단이 모호하고 자칫 잘못하면 판단자의 주관에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선도가 긴급한 경우에 대하여는 시행령으로 명확하게 그 기

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2) 서면사과 조치의 삭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하나로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가 있다.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서면사과를 하는 것 자체가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⁷⁾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 대한 폭행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서면사과가 형사처벌에 대한 증거자료로 활용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증거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서면사과는 문제가 될 수 있다.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와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징계조치를 내릴 수 있다는 점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는 삭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⁸⁾

(3) 특별교육 이수율의 통일화 및 개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 ‘학내외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가 있고, 제17조 제3항에도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 이수’가 있다. 두 특별교육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엄격하게 구분된다. 학내외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은 독립된 조치로서 이루어질 수 있으나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의 특별교육은 징계를 부과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추가적인 조치가 부여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학내외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은 제17조 제8항에 따라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으나 교육감이 정한 기

7) 김용수,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조치의 법적 한계 및 개선방안”, 학교폭력 예방법 이대로 좋은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토론회자료집, 2010.5.3, 38면; 박찬걸, 앞의 글, 120면; 오경식,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법제도적 분석과 개선방안”, 소년보호연구 제12호, 2009, 207면.

8) 이에 대하여 반대의견으로 일반인이 반성문을 요구하거나 서면사과를 강요할 경우 강요죄에 해당하지만 학교현장이나 가정에서 교사나 보호자가 반성문이나 서면사과문을 요구하는 것은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다(박병식, “학교폭력예방대책법의 개선방향”,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피해학생 보호하고 있는가, 학교폭력 사후대책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2010.12.7, 50면).

관에서의 특별교육은 출석일수 산입에 관한 규정이 없다.

하지만 경미한 폭력에 대하여 교육감이 특별교육기관을 지정하고 여기에 학생을 보내 교육받도록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외부에서 기관을 물색하여 지정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주로 해당학교를 특별교육기관으로 지정하게 되고 학내에서 특별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⁹⁾ 이렇게 되면 학내외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과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의 특별교육은 그 성격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이고, 이를 두 개 규정에서 함께 규율할 필요가 없게 된다. 따라서 제17조 제1항 제5호의 학내외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에 관한 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의 특별교육에도 출석일수를 산입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4) 보호자교육명령 위반에 대한 벌칙 수위의 재고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9항에 따르면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동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그러나 동일한 조건하에 있는 소년법의 경우 그 벌칙수위가 다르다. 2007년 개정된 소년법 제32조의2 제3항에 따라 소년부판사가 보호자에게 소년 보호를 위한 특별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에 위반한 경우 동법 제71조 제2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진다. 보호자교육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소년법과 학교폭력예방법의 규율범위가 다른 것은 문제가 있고, 이를 달리 볼만한 근거도 없어 보인다. 따라서 학교폭력예방법과 소년법상 보호자교육명령에 대한 제재 수위에 있어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5) 퇴학처분의 개선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9호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서 퇴학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17조 제1항 단서에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된다.

9) 김성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교육법학연구 제20권 제2호, 2008, 38면.

학교폭력의 3/4을 차지하고 있는 중학교 과정은 의무교육과정이고 이 단계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 퇴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는 가해학생에 대한 효과적인 처벌조치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피해학생의 보호라는 관점에서도 타당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¹⁰⁾

따라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9호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서 퇴학처분은 의무교육이 대상이 되는 자에 대하여는 할 수 없도록 하는 단서조항으로 말미암아 실효성 없는 규정이 되어버린바 고등학생에 대하여만 퇴학처분을 두도록 해야 할 것이다.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의 경우에는 퇴학처분을 대신할 조치로서 의무교육 중인 자 중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시·도대안교육센터에서 위탁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¹¹⁾

2. 피해학생 보호에 있어서의 개선방안

(1)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 가중 필요

장애학생 보호에 관하여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에서 장애학생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는 있지만 보호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은 없다. 장애학생의 경우 심리적·물리적으로 폭력에 대항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 있는 자에 대한 행위에 대하여는 비난가능성이 더 크다 할 것이다. 따라서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의 경우 제재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¹²⁾

따라서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의2의 장애학생 보호규정을 실효성 있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이 있는 경우 조치에 있어서 가중을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10) 이덕난,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입법 및 정책방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피해학생 보호하고 있는가?, 학교폭력 사후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2010.12.7, 13-14면.

11) 정한중,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경희법학 제44권 제1호, 92-93면.

12) 김경태, “학교폭력 피해자의 지원방안”, 피해자학연구 제15권 제1호, 2007, 175면; 김성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의 문제점과 개정방안”, 교육법학연구 제20권 제2호, 2008, 27-45면; 이덕난, 앞의 글, 14면.

(2) 실질적 피해지원을 위한 개선

개정법은 학교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교육활동 중 사고로 인하여 학생이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이를 보상하여 학생과 교직원 및 학교를 보호하고 안정된 교육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1991년 교육부로 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사단법인이다. 그러나 학교안전공제회는 시도마다 기금조성방법, 급여지급한도, 회원의 범위에서 차이가 있고, 회원가입도 임의가입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기금이 열악하고, 피해정도가 큰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범위가 제한되어 실제로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¹³⁾ 따라서 학교안전공제회에 의한 보상은 피해자 보호지원에 효과적이지 못하다.

최근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에서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심리상담 및 조연을 받는데 드는 비용, 일시보호를 받는데 드는 비용 등에 대하여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지급할 수 있는 지원범위에 한계가 있어 실질적인 지원이 되기 어렵다.¹⁴⁾ 따라서 학교안전공제회에 의한 학교폭력 피해보상의 경우 실질적 피해지원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바 학교폭력 피해지원을 위한 재원을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범죄피해자구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구조기금의 적용 요건을 보면 ‘범죄피해로 인해 사망하거나 장애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 피해구조를 받을 수 있다’고 하여 학교폭력으로 일정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 구조금에 의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범죄피해자구조기금법 시행령 제5조(기금의 용도)에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학교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을 추가함으로써 학교폭력 피해구제를 위한 기금 마련도 용이해질 것으

13) 김현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개선방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2010.5, 8면.

14) 김현철, 앞의 글, 14면; 박부희, “학교폭력 대처방안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피해학생 보호하고 있는가?, 학교폭력 사후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2010.12.7, 62면; 이덕난,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입법정책의 방향”, 교육법학연구 제22권 제2호, 2010, 164면.

로 보인다.

3. 전문상담교사 배치의 효율성 및 전문성 증대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에 “학교의 장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실을 설치하고,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라 전문상담교사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폭력 예방 5개년 기본계획을 처음 수립한 2005년부터 일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 308명을 배치하기 시작했다. 다음 해인 2006년에는 전문상담교사가 한 명도 채용되지 않았다. 2009년도 마찬가지다. 전문상담교사는 100~300명씩 신규 채용된 2007년, 2008년, 2010년은 학교폭력 예방·근절 15대 중점과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방안 등 관련 대책이 나온 해였다.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이슈가 될 때만 반짝 증원했다가, 사람들의 관심에서 사라지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 전문상담교사 정원을 동결한 것이다. 2011년 현재 전국 초·중 및 교육청에 배치된 전문상담교사는 883명에 불과하고, 전국 초·중·고교는 11,462곳의 대다수에 전문상담교사가 없어서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위해 전문상담을 해 줄 수 있는 상담인력이 매우 부족하다.

학교폭력의 대부분은 중학교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바 중학교에서만이라도 상담교사를 의무적으로 둘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서는 “전문상담교사를 둔다.”고만 규정하고 있지만 그 배치에 관하여 규정한 시행령 제33조 3항, 제34조 3항, 제36조 3항에서는 “전문상담교사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실제 전문상담교사를 두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¹⁵⁾ 실제로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현황을 보면 심리상담 조치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각 학교에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따라서 현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배치에 관한 규정을 초·중등교육법으로 가져

15) 이덕남/유지연,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입법 및 정책방안, 현안보고서 Vol.109, 국회입법조사처, 2010.12.24, 33면.

와 초중고에 반드시 상담교사를 두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예산상의 문제로 전체적으로 전문상담교사를 늘리는 것이 어렵다면 중학생의 학교폭력 피해가 심각하므로 중학교의 전문상담교사 충원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따라서 순차적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중학교 교원 배치기준), 제35조 제3항(고등학교 교원 배치기준), 제33조 제3항(초등학교 교원 배치기준)에서 “전문상담교사를 둘 수 있다”에서 “전문상담교사를 두어야 한다.”로 변경하고 보다 확실하게 이를 시행령이 아닌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의 방안으로서 상담교사나 학교사회복지사 같은 전문교사의 확충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Wee센터나 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 같은 지역사회 전문기관의 전문인력을 활용한 방안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12년 현재 전국 4곳(인천, 광주, 충남, 충북)에 설치되어 있는 위탁형 대안학교 Wee스쿨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¹⁶⁾ Wee스쿨은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장기적인 치유·교육이 필요한 학생이나 학교 또는 Wee센터에서 의뢰한 학생 또는 학업중단자를 위한 치료형 기숙학교로써, 교육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하지 못한 보호자 역할도 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된다. 제한된 상담교사 인력으로 인력배치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Wee스쿨과 같은 지역사회 전문기관과의 역할 분담을 통해 전문인력 및 시설의 확보를 해 나가는 방안이 효과적일 것이다.¹⁷⁾

4. 합리적 분쟁조정을 위한 제언

학교폭력의 해결방안으로 주로 자체해결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다. 분쟁조정은 일반소송과 비교하면 절차의 진행이 신속하고 간단하여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 경제적일뿐만 아니라, 절차가 비공개로 진행되며 분쟁당사자들의 자발적인 타협과 양보를 통해 합리적인 문제해결을 해 나간다는 점이 특징이다.

자치위원회가 분쟁조정의 중심에 있긴 하지만 분쟁조정이라는 준사법적절차를

16) 김성기, 앞의 글, 42면.

17) 김창균/임계령, “학교폭력의 발생원인과 대처방안”, 법학연구 제38집, 한국법학회, 2010, 190-191면; 이유진, “반인권적 일진경보로 학교폭력을 잡겠다고?”, 한겨레 21 제898호, 2012.2.15일자; 한국교육개발원, 학교폭력 대처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 2006, 240면.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분쟁조정결과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얼마나 신뢰할지도 의문이다. 분쟁조정이 된다 하더라도 가해자가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서로 화해하는 등의 방법은 사고로 인한 피해가 아주 경미한 경우엔 매우 효과적이고 손쉽게 분쟁 해결이 가능하나, 피해가 큰 경우에는 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키게 된다. 비공식적으로 처리되는 분쟁해결은 법적으로 명확하게 처리되지 않아 또다른 분쟁을 예고하게 되고, 사건당사자들이 상당기간 심리적 불안 상태에 놓이게 되며, 피해자의 예상치 못한 후유증 등에 대하여 다시 학교나 교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¹⁸⁾ 현행 학교폭력예방방법상 자치위원회의 분쟁조정기능은 분쟁조정 개시 후 1개월을 넘지 못하나, 자치위원회에서 분쟁이 조정되지 않을 경우 피해학생이나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가해학생을 형사고소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어 분쟁이 장기화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학교폭력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분쟁조정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학교 내 분쟁조정 권한을 현실화할 뿐만 아니라 학교가 주도하는 분쟁조정에 사법기관 또는 사법전문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내 외의 책임 있는 기관과 전문가가 중심이 되어 객관성과 중립성을 갖춘 분쟁조정기관이 설치되어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합의점을 찾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소년법상 화해권고제도 시스템을 학교폭력 문제해결에도 적용하여 ‘재판상 화해’와 같은 법적 효력이 인정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5. 관련법률과의 조화 모색방안

(1) 학교폭력 신고방식으로 학교장통고제 활용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에서 문제를 숨기고 덮으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럴 경우 학

18) 김용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문제점과 개정방안”, 변호사 제41집, 2011, 227면; 도중진, “학교폭력의 분쟁조정과 회복적 사법”, 대검찰청 형사법연구회 발표자료집, 2012.5.10, 9면 이하.

교폭력은 더 심각해지고 조직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기에 학교가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학교폭력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학교장통고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¹⁹⁾

소년부통고제도란 보호의 대상이 되는 소년을 발견한 학교, 사회복지시설, 보호관찰소의 장이 경찰이나 검찰을 거치지 않고 관할 소년부에 직접 통고하는 제도이다(소년법 제4조 3항). 이 제도는 학교폭력 등 학교 내에서 벌어지는 청소년범죄를 관련 기관종사자가 즉각적으로 인지하여 신고함으로써 비행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통고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학생들이 형사사건에 입건되지 않아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데다 법원이 조기에 관여함으로써 격리, 보호처분 등의 과정을 한 달여 안에 마쳐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학교장이 문제 학생을 ‘법원에 고발한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교사는 물론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팽배해 있기 때문에 일선 학교에서는 아직도 통고제도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학교장이 통고제도를 교권보호 차원에서 편향적으로 사용할 경우 학생인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는 만큼 대안학교 등 공교육의 틀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통고제도 취지와 처분 결과를 보면 형사입건과 비교했을 때 큰 장점이 있다. 경찰, 검찰의 수사단계를 거치지 않아 수사기록이 남지 않아 학생의 향후 활동에 지장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사로 인해 겪게 되는 트라우마를 예방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 또한 전문가의 적절한 심리조사과정을 통해 피해자의 회복을 고려할 수 있고 지속적인 관리·보호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제도라 생각한다. 학교폭력 문제의 경우 피해사실 인식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학교에서 학교폭력 문제를 덮으려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학교장이 직접 법원에 통고하는 시스템을 활용하여 조기에 사건을 발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통고제도의 적극 활용이 필요하리라 본다.

19) 대법원,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소년재판 심포지엄 자료집, 2012.5.21, 65면.

(2) 형사처벌연령 인하에 관한 재고

형법은 형사책임연령 기준을 14세로 보고, 14세가 되지 않은 자의 행위를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14세 미만자의 경우 지적 발육상태 뿐만 아니라 사물의 변별능력이나 변별에 따른 행동통제능력이 없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형사책임을 부정하고 있다.

최근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지적을 하면서 형사처벌 연령을 14세에서 12세로 인하하자는 주장이 있다. 2011년 11월 11일 이재오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도 형사책임연령을 14세에서 12세로 인하하는 안이 제안되었으며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2세로 조정하는 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형법 제정 당시 14세로 규정한 형사책임연령은 청소년의 성장속도에 맞게 하향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지만 형사처벌연령의 인하는 형사처벌의 영역을 지나치게 넓혀서 교육을 통해 교화·개선될 수 있는 기회를 뺏는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²⁰⁾ 영국의 경우 형사처벌연령을 10세로 인하하였지만 저연령범죄는 여전히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연령 인하가 범죄해결의 열쇠는 아니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아직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하지 않은 학생에게 형사처벌을 하게 되는 것은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므로 형사처벌 연령의 인하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V. 결론

지금까지 2012년 학교폭력예방법에 대한 검토와 이를 둘러싼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어떠한 제도들이 보완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제시해보았다. 2012년 개정법에서는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20) 이혜미,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조정의 논의와 쟁점”, 이슈와 논점 제372호, 국회입법조사처, 2012.1.27.

처벌이 일부 강화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법적 장치로서 미흡한 면이 있다.

첫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있어서, 조치거부나 기피에 대한 징계수위가 높지 않아 제재로서 효과적이지 않으므로 제재수위를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퇴학처분은 의무교육대상자인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게 되므로 초중생에 대한 징계로서 대안학교 교육 등 별도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서면사과의 경우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고 형사처벌의 증거자료로 활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되어야 한다. 제17조 제1항 제5호의 특별교육은 제17조 제3항의 교육감의 특별교육과 다르지 않으므로 삭제하되, 제17조 3항의 특별교육에 출석일수 산입규정을 두도록 한다. 보호자교육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소년법상 과태료 부과 규정과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둘째,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에 있어서, 장애학생에 대한 보호규정은 있으나 위반에 대한 가중규정은 없으므로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의 경우 징계수위를 높여야 한다. 학교안전공제회의 피해보상은 적절하지 못하므로 실질적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학교폭력법에 전문상담교사 배치가 의무화되어 있긴 하나 초중등교육법에는 배치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고 실무상 배치되지 않은 학교가 대부분이다.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현실화하기 위해 학교폭력 피해가 많은 중학교부터 먼저 배치하도록 하고, 전문상담교사의 배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그 대안으로서 Wee 스쿨과 같은 위탁형 대안시설을 활용한 상담교육을 해야 할 것이다.

넷째, 학교폭력의 분쟁해결을 위해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활동하고 있으나 실질적 분쟁조정역할을 하지 못하므로, 학교 내의 해결보다는 소년법상 화해권고제도와 연계하여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독자적 분쟁기구를 마련해야 한다. 그밖에도 조기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년법상 학교장통고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제18대 국회에서 발의된 개정안과 실제 개정 내용 전부를 보면 교사에 대한 징계, 가해학생에 대한 강력처벌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조치들이 학교와 가해학생에 대한 강력처벌로서 학교폭력을 줄이는데 얼마나 효과적일지 의

문이 든다. 학교폭력은 단지 학교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학생을 둘러싸고 있는 가정환경, 지역사회 환경, 학교환경, 경쟁적인 입시구조 등이 모두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어느 한 요소에 대한 규제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학교폭력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식이 단기적 강력처벌이 아니라 치료와 교육을 통한 장기적 안목으로 가진 대안모색으로 전향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학교의 대응방식도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학교폭력에 대하여 가해학생이나 교원을 처벌하고 징계하는데 치중하기보다는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과 치료, 반성의 기회 제공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학교폭력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학교가 앞장서야 하고, 지역사회나 외부전문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학교폭력은 숨긴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놓고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가 교육현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찾아갈 때 진정으로 학교폭력을 근절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건찬, “학교폭력 실태와 예방: 나 때리지마! 너 지켜줄게! 우리 모두는 소중한잖아”, 법연 26호, 한국법제연구원, 2012.2.
- 김경태, “학교폭력 피해자의 지원방안”, 피해자학연구 제15권 제1호, 한국피해자학회, 2007.
- 김범수, 학교폭력의 실태와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 김성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교육법학연구 제20권 제2호, 대한교육법학회, 2008.
- 김용수,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조치의 법적 한계 및 개선방안”, 학교폭력예방법 이대로 좋은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토론회자료집, 2010.5.3.
- 김용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문제점과 개정방안”, 변호사 제41집, 2011.
- 김창균/임계령, “학교폭력의 발생원인과 대처방안”, 법학연구 제38집, 한국법학회, 2010.
- 김현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개선방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2010.5.
- 대법원,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소년재판 심포지엄, 2012.5.21.
- 도중진, “학교폭력의 분쟁조정과 회복적 사법”, 대검찰청 형사법연구회 발표자료집, 2012.5.10.
- 박병식, “학교폭력예방대책법의 개선방향”,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피해학생 보호하고 있는가, 학교폭력 사후대책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2010.12.7.
- 박부희, “학교폭력 대처방안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피해학생 보호하고 있는가?, 학교폭력 사후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2010.12.7.
- 박윤기, “학교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동아대 박사학위논문, 2008.
- 박찬걸, “학교폭력대책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 소년보호연구 제15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10.

- 원혜옥,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년보호연구 제7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04.
- 오경식,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법제도적 분석과 개선방안”, 소년보호연구 제12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09.
- 이덕난,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입법 및 정책방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피해학생 보호하고 있는가?, 학교폭력 사후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2010.12.7.
- 이덕난,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입법정책의 방향”, 교육법학연구 제22권 제2호, 대한교육법학회, 2010.
- 이덕난/유지연,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입법 및 정책방안, 현안보고서 Vol.109, 국회입법조사처, 2010.12.24.
- 이유진, “반인권적 일진경보로 학교폭력을 잡겠다고?”, 한겨레 21 제898호, 2012.2.15.
- 이진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체계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입법정책 제1권 제1호, 한국입법정책학회, 2007.
- 이혜미,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조정의 논의와 쟁점”, 이슈와 논점 제372호, 국회입법조사처, 2012.1.27.
- 정한중,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경희법학 제44권 제1호, 경희대학교법학연구소, 2009.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학교폭력연구 제1권 제1호, 2011.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학교폭력연구 제1권 제2호, 2011.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대책 토론회 자료집, 2012.4.17.
- 한국교육개발원, 학교폭력 대처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 2006.

Revised Contents and Improvements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against Violence in Schools

Lee, Seung-hyun*.

There are a variety of laws to regulate school violence: Act on th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against Violence in Schools, Juvenile law, Criminal law, Criminal Procedure law, etc. However, they are not responding effectively to protect victims and to guide offenders in the right direction. In this respect, this article reviewed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the related legislation on the school violence focused on Act on th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against Violence in Schools.

As for the measures of offenders, the levels of restrictions need to be differentiated because refusal or evasion of the restrictions is not effectively handled with proper disciplinary action. Also, additional measures as disciplinary action are needed for first and secondary school students as subject to compulsory education cannot be expelled from school. Written apology should be eliminated because there are possibilities to limit freedom of conscience and to be utilized as evidence for criminal penalty. Special education of article 17 section 1 (5) needs to be rescinded in that there are not any other differences from that for superintendent of education. The imposition of fine for violation of Parenting Order and fine from juvenile law should be in balance.

Regarding protection for victims, school violence against handicapped must be strongly regulated. Additionally, as compensation of mutual aid association for the school safety is not proper, substantial support by local government is needed.

Arrangement of counseling teachers is mandated according to Act on the

* Associate Research Fellow, Korean Institute Criminology, Ph.D in Law.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against Violence in Schools. However, it is not compulsory on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so that majority of schools do not have counseling teachers. For more actualized alternatives, the counseling teachers should be arranged first to the schools having lots of school violence cases and counseling education utilizing alternative facilities such as 'Wee School' should be done.

Moreover, autonomous committee is established for dispute settlement of school violence but it is little more than a name. Therefore, independent dispute settlement body has to be established which is connected to reconciliation recommendation and can make the decision effective such as consent judgement. Besides, notification system of the school principal should be positively applied for the early intervention.

❖ Key words : Act on th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against Violence in Schools, school violence, correction of offenders, protection of victims, dispute mediation